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전단 중 “제7조”를 “제8조”로 한다.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를 각각 제20조부터 제25조까지로 하고, 제11조부터 제19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피해구제 지원의 대상) 법 제14조에 따른 피해구제 지원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포항지진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자
2. 포항지진으로 인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자

제12조(피해범위 산정기준) ① 포항지진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피해범위로 한다.

1. 치료비: 포항지진으로 인한 상해나 질병의 치료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2. 장례비: 포항지진으로 인한 사망자의 장례에 소요된 비용
3. 요양생활비: 제1호의 치료비 외에 치료기간 동안의 요양 및 생활에

필요한 비용

4. 사망·장해 지원금: 사망 또는 상해로 인한 후유 장애가 있는 경우 그 유족·가족에 대한 지원금

② 포항지진으로 인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피해범위로 한다.

1. 물건이 멸실·훼손된 경우에 그 물건의 수리비 또는 피해를 입은 당시의 교환가액
2. 물건의 멸실·훼손으로 인하여 휴업한 경우 그 휴업기간 중에 지출한 고정적 비용
3. 주택의 수리 또는 개축 기간 동안에 지출한 임시 주거비용

제13조(피해구제 지원금 결정기준) ① 포항지진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자의 피해에 대하여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지원금을 결정한다.

② 포항지진으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에 대하여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지원금을 결정한다.

③ 피해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포항지진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과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제외하고 지원금을 결정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3항에 따른 지원금
2. 「재해구호법」 제14조의 재해구호기금에 따른 지원

3.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의 특별재생지역 지정에 따른 지원
4. 「풍수해보험법」 제18조에 따라 보험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은 풍수해보험금
5.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 및 「포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른 포항지진 피해를 입은 공동주택 공용부분에 대한 피해 복구비
6.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23조의4에 따른 임대주택 지원
7. 이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

제14조(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신청) ①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피해자로 인정한다.

1. 법 제2조제2호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포항지진으로 인한 피해사실을 입증한 자
 2. 포항지진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제13조제3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받은 자
- ②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포항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인정받거나 지원금 지급을 신청하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1. 신청인이 법 제2조제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포항지진으로 인한 피해 사실 및 피해 금액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서식의 위임장(제5항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만 해당한다)
 4.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금융기관의 거래통장 사본 및 신청인의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다) 각 1부
-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심의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④ 제2항의 피해자 인정 또는 지원금 지급 신청은 피해자임을 인정 받으려는 자 본인이 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 인정을 받으려는 자가 미성년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피해자 인정을 받으려는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민법」에 의한 재산상속인을 말한다)이 신청하여야 한다.
- ⑤ 제4항에 따라 피해자 인정 등을 신청하려는 자가 이민·입원·수감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확인하는 별지 제2호서식

의 위임장에 의하여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1. 이민 등 국외 체류의 경우에는 해외공관의 장
2. 입원의 경우에는 그 의료기관의 장
3. 교도소 등에 수용된 경우에는 그 수용기관의 장
4. 그 밖의 경우에는 주소지 읍·면·동장

⑥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입주자들이 선정한 입주자 대표)는 공동주택 공용부분에 대한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반드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입주자 전체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을 거쳐야 한다.

⑦ 심의위원회는 신청인이 제2항에 따라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서류가 누락되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필요한 기간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피해자 인정 여부 및 지원금 등의 결정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5조(피해자 인정 등을 위한 사실조사)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자 인정 여부 및 지원금 금액의 결정을 위하여 피해 현장 방문 또는 피해자 면담 등의 방법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 조사만으로 위의 결정을 할 수 있다.

1. 제출받은 서류만으로 피해사실 및 피해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 경우
2. 심의위원회가 정하는 일정 금액 이하의 경미한 피해에 대하여 지원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피해 복구비의 일부를 국가 등으로부터 이미 지원받아 피해자의 본인 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원만 필요한 경우

가.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 및 「포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 공용부분 피해 복구비의 일부를 지원받은 경우

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3항에 따라 피해 복구비의 일부를 지원받은 사립 초·중·고·대학교

② 심의위원회는 포항지진 당시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2항에 따라 접수된 자연재난 피해 신고서, 포항시가 작성한 현장조사대장 등을 조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16조(결정 및 결정서의 송달) ① 심의위원회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피해자 인정 여부 및 지원금 금액을 결정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3호서식의 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회의 관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2. 결정 주문

3. 결정 이유

4. 결정 연월일

② 심의위원회가 제1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결정통지서에 결정서 정본을 첨부하여 신청인(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송달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지원금의 지급) 심의위원회는 제16조제2항에 따른 결정통지서를 송달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인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8조(재심의) ① 신청인은 결정통지서를 송달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에 재심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심의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의 신청기간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신청 기간이 종료된 이후로 하되 구체적인 기간 및 절차·방법은 심의위원회가 따로 정한다.

1. 피해 발생 여부 및 피해 정도에 변화가 있는 경우
2. 당초 신청시 누락되었던 중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는 경우
3. 피해금액 산정 또는 지원금 결정에 오류가 있음이 명백한 경우
4.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

② 심의위원회의 재심의 및 결정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법 제16조제3항 및 이 영 제1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16조제3항 중 “6개월”은 “2개월”로 본다.

제19조(경제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 지원) 국가는 법 제18조에 따른 포항시의 경제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특별지원방안을 시행할 때 관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고 심의위원회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25조(중전의 제16조) 중 “별표와”를 “별표 1과”로 한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고유 식별정보의 처리) 심의위원회 및 지원단(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 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6조, 이 영 제14조 및 제16조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신청 및 지급결정 등에 관한 사무
2. 제16조에 따른 결정서의 송달에 관한 사무
3. 제17조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

별표를 별표 1로 한다.

별표 1의 제목 중 “(제16조 관련)”을 “(제25조 관련)”으로 한다.

별표 2 및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서식 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영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사망자 및 상해를 입은 자에 대한 지원금 결정 기준(제13조제1항 관련)

다음 표에 따른 유형별 지원금을 합산한 금액을 지원한다.

구분	사망자	상해를 입은자
치료비	포항지진으로 인한 상해나 질병의 치료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1.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 비용 중 같은 법 제44조에 따라 피해자가 부담하는 금액 2. 「의료급여법」 제7조에 따른 의료급여 비용 중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피해자가 부담하는 금액	
장례비	지진피해 당시의 평균임금(매년 주기적으로 임금통계를 공표하는 공신력 있는 임금조사기관이 조사한 보통인부의 일용노동임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70일분	미지급
요양생활비	지진피해 당시의 평균임금에 다음 구분에 따른 지급비율과 치료기간(일단위로 산정한다)을 곱한 금액	
	구분	지급비율(%)
	사망자, 장해등급 1급	30.00
	장해등급 2급	28.50
	장해등급 3급	27.00
	장해등급 4급	25.50
	장해등급 5급	24.00
	장해등급 6급	22.50
	장해등급 7급	21.00
	장해등급 8급	19.50
	장해등급 9급	18.00
	장해등급 10급	16.50
	장해등급 11급	15.00
	장해등급 12급	13.50
	장해등급 13급	12.00

	장해등급 14급	11.00
	후유장해가 없는 상해를 입은 자	10.00
비고		
“장해등급”이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에 따른 장해등급을 말한다.		
사망·장해 지원금	지진피해 당시의 월 평균임금(평균임금의 30일분을 말한다)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지급비율을 곱한 금액	
	구분	지급비율(%)
	사망자, 장해등급 1급	500
	장해등급 2급	475
	장해등급 3급	450
	장해등급 4급	425
	장해등급 5급	400
	장해등급 6급	375
	장해등급 7급	350
	장해등급 8급	325
	장해등급 9급	300
	장해등급 10급	275
	장해등급 11급	250
	장해등급 12급	225
	장해등급 13급	200
	장해등급 14급	175
비고		
“장해등급”이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에 따른 장해등급을 말한다.		

[별표 3]

재산피해에 대한 지원금 결정기준(제13조제2항 관련)

1. 아래 표에 따른 유형별 한도금액 내에서 피해금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한다.

구 분		지원한도 금액(단위: 백만원)
가. 주택	수리 불가능한 경우	120
	수리 가능한 경우	60
	세입자	6
	기타(가재·건물부속물 등)	2
나. 소상공인, 중소기업		60
다. 농·축산 시설		30
라. 종교시설, 사립보육시설 등		120

비고

- 위 표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사립 유치원 및 사립 초·중·고등학교의 경우 피해 복구 금액을 지원한다.
- 가목의 ‘주택’은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전유부분을 말하며,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은 종교시설, 사립보육시설의 기준을 따른다.
- 라목의 시설은 비영리 목적의 시설에 한정한다.

2. 1호의 피해금액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구 분		피해금액 산정기준
물건의 멸실·훼손 피해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피해 당시의 해당물건의 교환가액
	수리가 가능한 경우	수리비에 상당하는 금액
휴업기간의 고정적 비용		물건의 수리 또는 교체에 필요한 기간동안 영업 활동 지속을 위하여 지출한 임차료·인건비·제세공과금·보험료 등 고정적 비용
임시 거주 비용		주택의 멸실·훼손으로 인하여 임시주택에 거주한 경우, 임대료·보증금 이자 등 임시 주거 목적으로 지출한 금액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신청서(인명피해용)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80일
①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② 대리인 (선임한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신청인과의 관계	
	연락처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③ 신청구분 [] 피해자 인정 [] 지원금 지급		* 피해자 인정만을 원하는 경우, 피해자 인정란에만 “√” 표시 * 지원금 지급을 원하는 경우, 모두 “√” 표시	
④ 피해유형 [] 사망 [] 상해			
⑤ 피해내용	※ 이 난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피해내용(구체적으로)	
	1		
	2		
	3		
⑥ 지급 신청액	금액 :	원정(₩)	* 반드시 적을 필요는 없으나, 적을 경우 산출명세를 첨부합니다.
	* 포항지진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기존에 지급받은 금액(제13조제3항 참조) 및 지급항목(단, 외연금은 제외하고 기재):		
	금액	원정(₩)	

본인은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 귀중

첨부서류	뒤쪽 참조
------	-------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첨부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1. 신청인이 법 제2조제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각 1부 가. 포항지진 당시 포항시에서 사업장을 운영했던 자 :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사실증명원 등 사업장 운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포항지진 당시 근로활동을 하고 있던 자 :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 등 근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다. 포항지진 당시 학업 수행을 하고 있던 자 : 졸업증명서, 재학증명서 등 학업 수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라. 포항지진 당시 동산·부동산을 소유했던 자 : 등기사항증명서, 매매계약서, 자동차등록원부 등 동산 또는 부동산 소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포항지진으로 인한 피해 사실 및 피해 금액 등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각 1부 가. 사망 또는 후유장애 증명서류: 사망진단서, 사망사실이 기재된 기본증명서, 후유장애 진단서 및 의사소견서 등 나. 상해·질병의 치료비 증명서류: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세급계산서, 카드명세서, 현금영수증 등 다. 그 밖에 포항지진으로 인한 피해사실 및 피해 금액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3. 별지 제2호서식의 위임장(제14조제5항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만 해당한다) 1부 4. 기타 제출 서류 가. 신청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용도: 지원금 청구 및 수령용) 1부 나. 신청인의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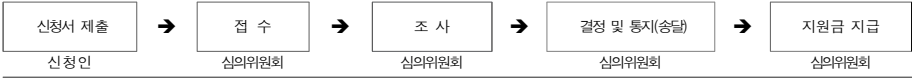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 ②란은 신청인이 제14조제5항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 작성합니다.
- ③란에는 피해자 인정이나 지원금 지급 중 해당하는 란(두가지 모두 신청 가능)의 []에 "√"를 표시합니다.
- ⑥란의 지급신청액은 제13조, 별표 2를 참고하여 작성할 수는 있으나 반드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작성할 경우 그 산출명세를 첨부) 또한 포항지진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금액 및 지급항목을 작성합니다.

처리절차



■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나)]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신청서(재산피해용)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80일	
①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② 대리인 (선임한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신청인과의 관계		
	연락처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③ 신청구분	[] 피해자 인정 [] 지원금 지급		* 피해자 인정만을 원하는 경우, 피해자 인정란에만 "√" 표시 * 지원금 지급을 원하는 경우, 모두 "√" 표시	
④ 피해유형	[] 물건피해 [] 휴업기간의 고정비용 [] 임시거주비용 * 물건피해 : 별표 3의 물건의 멸실·훼손 피해			
⑤ 피해내용	※ 이 난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주택/ 소상공인·중소기업/ 농·축산시설/ 종교·사립보육시설 등)	피해주소 (지번주소)	피해내용 (구체적으로)
	1			
	2			
	3			
⑥ 지급 신청액	금액 : 원정(W)	* 반드시 적을 필요는 없으나, 적을 경우 산출명세를 첨부합니다.		
	* 포항지진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기존에 지급받은 금액(제13조제3항 참조) 및 지급항목(단, 의연금은 제외하고 기재): 금액 원정(W)			

본인은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 귀중

첨부서류	뒤쪽 참조
------	-------

210mm×297mm[백상지 80g/㎡]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신청 위임장

접수번호		
수 임 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위임자와의 관계	전화번호 () - 의 휴대전화번호

본인은 위 사람에게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제5항에 따라 포항지진으로 인한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신청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 임 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이 민
[] 임 원
위 위임자는 [] 교도소 수용 중임을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제5항에 따라 확인합니다.
[] 기타()

년 월 일

확 인 기 관 장

직인

(뒤쪽)

첨부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1. 신청인이 법 제2조제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각 1부 가. 포항지진 당시 포항시에서 사업장을 운영했던 자 :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사실증명원 등 사업장 운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포항지진 당시 근로활동을 하고 있던 자 :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 등 근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다. 포항지진 당시 학업 수행을 하고 있던 자 : 졸업증명서, 재학증명서 등 학업 수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라. 포항지진 당시 동산·부동산을 소유했던 자 : 등기사항증명서, 매매계약서, 자동차등록원부 등 동산 또는 부동산 소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포항지진으로 인한 피해 사실 및 피해 금액 등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각 1부 가. 물건의 피해사실 및 수리·교체에 따른 거래 증명서류: 피해사진, 수리·교체 전후 사진, 전자세금계산서, 카드명세서 및 입금증명서 등 나. 휴업기간의 고정비용 지출내역 증명서류: 임대차계약서, 급여지급명세서, 고용계약서 등 다. 그 밖에 포항지진으로 인한 피해사실 및 피해 금액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3. 별지 제2호서식의 위임장(제14조제5항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만 해당한다) 1부 4. 기타 제출 서류 가. 신청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용도: 지원금 청구 및 수령용) 1부 나. 신청인의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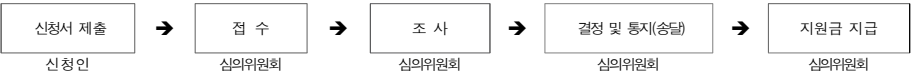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1. ②란은 신청인이 제14조제5항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 작성합니다.
2. ③란에는 피해자 인정이나 지원금 지급 중 해당하는 란(두가지 모두 신청 가능)의 []에 "√"를 표시합니다.
2. ⑥란의 지급신청액은 제13조, 별표 3을 참고하여 작성할 수는 있으나 반드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작성할 경우 그 산출명세를 첨부) 또한 포항지진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금액 및 지급항목을 작성합니다.

처리절차



(앞쪽)

공공기관 공공기관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결정서				
결정번호		제 호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 소			
주문				
피해자 인정 여부	[] 인정 [] 불인정			
지원금 지급액	금액 : 원정(₩)			
결정이유 및 지급액 명세는 뒤쪽에 기재				
년 월 일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 관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항 목		금 액	
지 급 액 명 세	1.	금액 :	원정(₩)
	2.	금액 :	원정(₩)
	3.	금액 :	원정(₩)
	4.	금액 :	원정(₩)
	5.	금액 :	원정(₩)
	6.	금액 :	원정(₩)
	7.	금액 :	원정(₩)
	8.	금액 :	원정(₩)
	9.	금액 :	원정(₩)
	10.	금액 :	원정(₩)
	합계	금액 :	원정(₩)
지급액		금액 :	원정(₩)
결 정 이 유			
[피해자 인정 여부]			
[지급액 산출근거]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결정통지서

접수번호: 제 호
 성 명:
 주 소: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귀하의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신청에 대하여 불임 결정서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라 재심의 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 심의위원회가 정하는 신청 기간에 재심의 신청서(별지 제5호서식) 1부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단, 재심의 신청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신청기간이 종료된 이후부터 가능)

- 첨부: 1.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결정서正本 1부
 2.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재심의 신청서 서식 1부

년 월 일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

관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재심의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남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신청인	성명(한글)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청 사유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라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결정(결정번호 제 호, 년 월 일자)에 대하여 재심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

귀중

첨부서류	재심의 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재심의 신청서 작성 신청인	→	접 수 위원회	→	조사 위원회	→	심의·결정 위원회	→	결과 통지 위원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신·구조문대비표

[illegible]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피해범위로 한다.

1. 치료비: 포항지진으로 인한
상해나 질병의 치료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2. 장례비: 포항지진으로 인한
사망자의 장례에 소요된 비용
3. 요양생활비: 제1호의 치료비
외에 치료기간 동안의 요양
및 생활에 필요한 비용
4. 사망·장해 지원금: 사망 또
는 상해로 인한 후유 장애가
있는 경우 그 유족·가족에
대한 지원금

② 포항지진으로 인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피해범위로 한다.

1. 물건이 멸실·훼손된 경우에
그 물건의 수리비 또는 피해
를 입은 당시의 교환가액
2. 물건의 멸실·훼손으로 인하
여 휴업한 경우 그 휴업기간
중에 지출한 고정적 비용
3. 주택의 수리 또는 개축 기간
동안에 지출한 임시 주거비용

제13조(피해구제 지원금 결정기준) ① 포항지진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자의 피해에 대하여는 별표 2의 기준에

<신 설>

따라 지원금을 결정한다.

② 포항지진으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에 대하여는 별표 3의 기준
에 따라 지원금을 결정한다.

③ 피해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포항지진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
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것과 같은 종류의 보상
금 또는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
는 그 금액을 제외하고 지원금
을 결정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법」 제66조제3항에 따른 지
원금

2. 「재해구호법」 제14조의 재
해구호기금에 따른 지원

3.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의
특별재생지역 지정에 따른 지
원

4. 「풍수해보험법」 제18조에
따라 보험사업자로부터 지급
받은 풍수해보험금

5.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
제1항 및 「포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3조제3항에 따
른 포항지진 피해를 입은 공
동주택 공용부분에 대한 피해

<신 설>

복구비

6.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
칙」 제23조의4에 따른 임대
주택 지원

7. 이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국
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

제14조(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
급 신청) ①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피
해자로 인정한다.

1. 법 제2조제2호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포항
지진으로 인한 피해사실을 입
증한 자

2. 포항지진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제13조제3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받은 자

②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포항
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인정받거
나 지원금 지급을 신청하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전자
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

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이 법 제2조제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포항지진으로 인한 피해 사실 및 피해 금액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서식의 위임장(제5항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만 해당한다)

4.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금융기관의 거래통장 사본 및 신청인의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다) 각 1부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심의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피해자 인정 또는 지원금 지급 신청은 피해자임을 인정받으려는 자 본인이 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 인정을 받으

려는 자가 미성년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피해자 인정을 받으려는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민법」에 의한 재산상속인을 말한다)이 신청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피해자 인정 등을 신청하려는 자가 이민·입원·수감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확인하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위임장에 의하여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1. 이민 등 국외 체류의 경우에는 해외공관의 장

2. 입원의 경우에는 그 의료기관의 장

3. 교도소 등에 수용된 경우에는 그 수용기관의 장

4. 그 밖의 경우에는 주소지 읍·면·동장

⑥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입주자들이 선정한 입주자 대표)는 공동주택 공용부분에 대한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신

<신 설>

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반드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입주자 전체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을 거쳐야 한다.

⑦ 심의위원회는 신청인이 제2항에 따라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서류가 누락되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필요한 기간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피해자 인정 여부 및 지원금 등의 결정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5조(피해자 인정 등을 위한 사실조사)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자 인정 여부 및 지원금 금액의 결정을 위하여 피해 현장 방문 또는 피해자 면담 등의 방법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 조사만으로 위의 결정을 할 수 있다.

1. 제출받은 서류만으로 피해사실 및 피해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 경우
2. 심의위원회가 정하는 일정 금액 이하의 경미한 피해에

<신 설>

대하여 지원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피해 복구비의 일부를 국가 등으로부터 이미 지원받아 피해자의 본인 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원만 필요한 경우

가.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 및 「포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 공용부분 피해 복구비의 일부를 지원받은 경우

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3항에 따라 피해 복구비의 일부를 지원받은 사립 초·중·고·대학교

② 심의위원회는 포항지진 당시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2항에 따라 접수된 자연재난 피해신고서, 포항시가 작성한 현장조사대장 등을 조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16조(결정 및 결정서의 송달)

① 심의위원회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피해자 인정 여부 및 지원금 금액을 결정한 때에는

<신 설>

<신 설>

다음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3호 서식의 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회의 관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2. 결정 주문

3. 결정 이유

4. 결정 연월일

② 심의위원회가 제1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결정통지서에 결정서 정본을 첨부하여 신청인(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송달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지원금의 지급) 심의위원회는 제16조제2항에 따른 결정통지서를 송달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인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8조(재심의) ① 신청인은 결정통지서를 송달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에 재심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심의위원회

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의 신청기간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신청 기간이 종료된 이후로 하되 구체적인 기간 및 절차·방법은 심의위원회가 따로 정한다.

1. 피해 발생 여부 및 피해 정도에 변화가 있는 경우

2. 당초 신청시 누락되었던 중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는 경우

3. 피해금액 산정 또는 지원금 결정에 오류가 있음이 명백한 경우

4.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

② 심의위원회의 재심의 및 결정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법 제16조제3항 및 이 영 제1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16조제3항 중 “6개월”은 “2개월”로 본다.

제19조(경제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 지원) 국가는 법 제18조에 따른 포항시의 경제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특별지원방안을 시행할 때 관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고 심의위원회의

<신 설>

<u>제11조 ~ 제15조</u> (생략) <u>제16조</u>(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u>별표와</u> 같다. <u><신설></u>	<u>견을 들어야 한다.</u> <u>제20조 ~ 제24조</u> (현행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와 같음) <u>제25조</u>(과태료의 부과기준) ----- ----- ----- <u>별표 1과</u> ----- --. <u>제26조</u>(고유 식별정보의 처리) <u>심의위원회 및 지원단(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 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u> <u>1. 법 제16조, 이 영 제14조 및 제16조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신청 및 지급결정 등에 관한 사무</u> <u>2. 제16조에 따른 결정서의 송달에 관한 사무</u> <u>3. 제17조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u>
---	--